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데라게란덴㈜(이하 당사)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당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계약 상품

차주의 신용 평점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의 신용등급 및 평점이 개선된 경우,
-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당사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실적 등급이 상향된 경우 등.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는 차주는 당사에 신청서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 대표전화 및 팩스로 금리인하요구를 접수합니다.

- 필요서류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 차주의 신용등급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함.
-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 (접수시 당사에 문의바람)

신청결과 통지

- 당사는 차주로부터 징구한 행사요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 충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차주의 확인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우편 통지, E-mail 통지, 문자 통지 중 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당사의 심사결과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와 당사는 대출조건 변경 약정을 체결합니다. 당사의 심사결과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지 않다고 확인된 경우, 당사는 결과 통지와 함께 당사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합니다.

* 대표 전화: 02-551-2465

* 접수 팩스: 02-551-2577